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1138호)

2024.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6. 28.
3. 회 부 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건수가 약 8배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필요성과 행정수요가 증가하였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을 통해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3).

Ⅲ. 검토의견

1.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현행	개정안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u>국가</u>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u> 는----- -----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② ----- ----- ----- -----

현행	개정안
(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u>국가</u>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u>국가</u>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④ (생략) ⑤ <u>국가</u>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생략)	-----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u>----- ----- ----- ----- ----- -----.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u>는----- ----- ----- ----- ----- -----.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u>가----- ----- ----- ----- ----- -----. ⑥ (현행과 같음)

헌행법 제7조의31)에 따르면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자 등은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불법 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삭제지원 비용을 지출한 경우 불법촬영물등 관련 범죄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현재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5항 제7호2)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여성인권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촬영물등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 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 ②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④ (생략)
- 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 4월 개소한 날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1,185,459건의 삭제지원을 하였음.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실적(2018.4.30.~2024.6.30.) >

(단위 : 건수)

연도	총 지원건수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법률 지원연계	의료 지원연계
2018년	33,921	4,787	28,879	203	52
2019년	101,378	5,735	95,083	500	60
2020년	170,697	11,452	158,760	445	40
2021년	188,083	17,456	169,820	708	99
2022년	234,560	19,259	213,602	1,525	174
2023년	275,520	28,082	245,416	1,819	203
2024. 6.	181,300	13,519	165,365	2,365	51
계	1,185,459	100,290	1,076,925	7,565	679

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도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재, 서울³⁾ 및 경기⁴⁾ 등 지역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1. ~ 6. (생략)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
8. · 9. (생략)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 ⑧ (생략)
3)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기관⁵⁾을 별도로 운영하고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2021년부터 세부사업인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에 내역사업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신규 편성⁶⁾되었고, 2024년 7월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14개소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지원, 초기 긴급 삭제지원⁷⁾,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⁸⁾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도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삭제지원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

제9조(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5.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 [참고자료 1] 지역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현황

6) 2024년도 예산은 양성평등기금의 세부사업인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관됨.

7)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삭제지원**을 하고 있음.

8) [참고자료 2]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현황

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한편, 현재 구상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고 삭제지원에 소요된 비용 산출의 정확성 문제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인바, 지자체의 구상권 행사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삭제비용 구상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의 접근성, 신속성 제고를 위해 피해자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650

[참고자료 1] 지역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현황⁹⁾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9조
- 사업기간/운영방식 : 2022. 3. ~ / 공기관 위탁사업(서울여성가족재단)
- 사업인력 및 예산 : 13명 / ('24년) 1,419백만원(시비 100%)
- 주요 사업 : 피해자원스톱 지원,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 관련 근거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사업기간/운영방식 : 2021. 2. ~ / 공기관 위탁사업(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사업인력 및 예산 : 15명 / ('24년) 298백만원(사업비, 도비 100%)
- 주요사업: 상담·삭제지원 등 피해자지원, 도민 대응감시단 운영 예방 및 홍보사업

□ 부산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디지털성범죄피해대응센터

- 관련 근거 :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7조
- 사업기간/운영방식 : 2022. 9. ~ / 공기관 위탁사업(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 사업인력 및 예산 : 6명 / ('24년) 1,269백만원(국비 44백만원, 시비 1,225백만원)
- 주요 사업 :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유포 모니터링, 자료작성 등 수사지원

9) 자료: 여성가족부

□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 관련 근거: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6조
- 사업기간/운영방식: 2021. 6. ~ / 공기관 위탁사업(인천여성가족재단)
- 사업인력 및 예산: 6명 / ('24년) 587백만원(국비 44백만원, 시비 543백만원)
- 주요 사업: 상담·삭제지원 등 피해자지원, 인식개선 사업, 예방 서포터즈 운영

[참고자료 2]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현황

○ 광역 시·도에 특화상담소를 지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성을 반영한 심층 심리상담, 수사조력 등 피해자 중심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 추진 : 2021년 ~ (계속)/ 지자체 보조(국비 50%)

* (2021) 7개(294백만원) → (2022) 10개(576백만원)→ (2023) 14개 지역(595백만원) → (2024) 14개 지역(613백만원)

<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지정 현황 >

지역	상담소명	상담소유형	2024년 보조금액 (천원)	지원 내용
경남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통합상담소	43,785	피해 상담, 긴급 삭제지원, 수사 동행, 무료법률지원 연계, 의료기관 연계, 치유회복 프로 그램 운영 등
경북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통합상담소	43,785	
광주	광주YWCA통합상담지원센터	통합상담소	43,785	
대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파아라	통합상담소	43,785	
대전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43,785	
부산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지자체 다성센터	43,785	
세종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통합상담소	43,785	
울산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통합상담소	43,785	
인천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지자체 다성센터	43,785	
전남	행복누리 목포여성상담센터	통합상담소	43,785	
전북	성폭력예방치료센터	통합상담소	43,785	
제주	제주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통합상담소	43,785	
충남	해뜰통합상담소	통합상담소	43,785	
충북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통합상담소	43,785	
합 계			612,990	

자료: 여성가족부

< 지역특화상담소 지원 현황(총괄) >

연도	지원 피해자 (명)	지원건수(건)					
		계	상담	삭제 지원	치유회복 프로그램	수사· 법률	의료 지원
2021 (7개소)	631	7,927	5,656	179	512	1,270	310
2022 (10개소)	1,141	17,635	10,011	3,554	1,041	2,374	655
2023 (14개소)	1,751	24,582	13,387	5,770	1,415	3,506	504
2024.상 (14개소)	816	10,902	5,547	3,298	295	1,490	272

자료: 여성가족부

< 지역별 지원건수 >

(단위 : 건)

구분	2021년도 (7개소)	2022년도 (10개소)	2023년도 (14개소)
전체 지원건수	7,927	17,635	24,582
경남	1,633	3,035	3,529
경북	773	852	564
광주	-	482	754
대구	1,360	1,970	2,206
대전	-	1,508	1,781
부산	2,302	2,130	1,348
세종	-	-	272
울산	-	-	879
인천	-	4,434	8,262
전남	-	-	577
전북	873	1,403	1,986
제주	480	451	864
충남	506	-	798
충북	-	1,370	762

주: 매년 공모 방식으로 수행기관 선정하여, 연도별로 수행기관이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